

심야영업중 관광지내 대중음식점에 대한 제한시간 완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74
----------	-----

발의년월일 : 1993. 7. .

발의자 : 한영환의원외2인

□ 주 문

정부에서는 민생치안을 확립시켜 진정으로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지시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각 분야에 걸쳐 새질서·새생활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식품위생법 제30조 (영업시간 제한) 규정에 의하여 유흥업소, 대중음식점등 업소별 영업 행위에 대한 영업시간을 강원도지사 고시로 도내전역을 24:00까지로 제한하여 지역특성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범법행위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시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면 지역여건에 따라 영업시간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의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국립공원 설악산을 배경으로 천혜의 4계절 관광요건을 갖춘 유수의 관광지로 수려한 경관을 관광하기 위하여 관광객이 갈수록 점차 증가일로에 있으며 '92년도에 530만명에서 '93년도에는 6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휴및 하계·추계등 관광 성수기에는 일시적인 탐방객의 급증으로 정기적인 수송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일반 고속버스와 승용차등이 영업제한시간 이후인 자정이 지나 도착함으로 인하여 늦은시간에 이용할 대중음식점이 없어 대다수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중음식점에서는 관광객의 간절한 요구로 말미암아 단순한 식사제공을 위해 영업 제한시간 일·이십분을 어겼다하여 영업정지와 과다한 벌과금을 처분받아 영세업소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시기에 순리에 역행하는 행정단속 위주의 행위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정부의 신한국 창조는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실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내 전역의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업제한시간의 고시는 조정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류 제공을 위한 유흥업소의 규제는 지속적으로 단속되어져야 하겠으나, 관광객의 식사 제공을 위한 대중음식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 시간의 완화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정부의 신한국 창조야말로 영세한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순수한 대중음식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편익을 주어 주민편의 위주 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대중음식점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 제안이유

'9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지시로 선포된 범죄와 전쟁의 일환으로 유흥, 대중음식점등 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지역특성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연휴및 하계·추계관광 성수기시 심야에 도착한 대다수 관광객들이 영업제한시간 이후에 음식점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영세대중업소에 영업시간 제한이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어 대중음식점에 대한 영업규제의 대폭 완화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특히, 우리지역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국립공원 설악산을 배경으로 천혜의 4계절 관광요건을 갖춘 유수의 관광지로 수려한 경관을 관광하기 위하여 관광객이 갈수록 점차 증가일로에 있으며 '92년도에 530만명에서 '93년도에는 6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휴및 하계·추계등 관광 성수기에는 일시적인 탐방객의 급증으로 정기적인 수송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일반 고속버스와 승용차등이 영업제한시간 이후인 자정이 지나 도착함으로 인하여 늦은시간에 이용할 대중음식점이 없어 대다수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중음식점에서는 관광객의 간절한 요구로 말미암아 단순한 식사제공을 위해 영업 제한시간 일·이십분을 어겼다하여 영업정지와 과다한 벌과금을 처분받아 영세업소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시기에 순리에 역행하는 행정단속 위주의 행위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정부의 신한국 창조는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실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내 전역의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업제한시간의 고시는 조정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류 제공을 위한 유흥업소의 규제는 지속적으로 단속되어져야 하겠으나, 관광객의 식사 제공을 위한 대중음식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 시간의 완화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정부의 신한국 창조야말로 영세한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순수한 대중음식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편익을 주어 주민편의 위주 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대중음식점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 제안이유

'9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지시로 선포된 범죄와 전쟁의 일환으로 유흥, 대중음식점등 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지역특성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연휴및 하계·추계관광 성수기시 심야에 도착한 대다수 관광객들이 영업제한시간 이후에 음식점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영세대중업소에 영업시간 제한이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어 대중음식점에 대한 영업규제의 대폭 완화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임.